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자	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합작대상자	국가명		
	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합작사업 개요	합작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포획 어종	어업 방법	
	사용 어선		
	투자 규모	투자 비율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합작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해당),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각 1부 ※ 선박국적증서 사본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어업 개시일까지 선박 확보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